

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(재)공고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경제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6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임용인원	근무기간	담당예정 직무
동물보호법 관련 단속·점검업무	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“마”급	1명	2024. 채용일 ~ 2026. 2. 28. (주 35시간)	· 동물보호법 관련 민원처리 ·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, 점검 · 동물보호법 관련 과태료 업무 등
동물 등록업무		1명	2024. 7. 1. ~ 2026. 2. 28. (주 35시간)	· 동물보호법 관련 민원처리 · 동물등록 - 동물 신규변경 신고 및 동물등록증 발급 - 동물등록 대행업체 지정·교육·관리 - 맹견 소유자 관리 · 유실·유기동물 보호 관리 - 동물보호센터 지정 - 유실·유기동물 반환 및 기증·입양 - 야생화된 유기견(들개) 관리 등

※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나 인력수요, 근무실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

※ 단속·점검 업무는 주35시간 범위 내에서 하되 단속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함

2. 법 령 근 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

3. 응시 자격 요건

○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지역·연령·성별 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-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 -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
구 분	응시자격 요건	
직무분야 응시요건	○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) ▶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	
	단속점검	국가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동물 관련 단속 업무 경력
	동물등록	국가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동물보호단체 등 관련 기관에서 해당 업무 경력
	○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예시) 한국펫고등학교(반려동물매니지먼트과), 고양고등학교(반려동물관리과), 대구보건고등학교(반려동물케어과),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(애완동물과),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(동물산업과), 연성대학교(반려동물산업과), 연암대학교(동물보호학과) 등 	

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- 근무시간 : 주 35시간(1일 7시간 근무) ※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
- 근무부서 :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및 강남구 관내
- 보수수준
 - 등록업무 : 기본급 월 21,680천원(월 1,806,660원) + 기타수당
 - 단속업무 : 기본급 월 21,680천원(월 1,806,660원) + 기타수당
 ※ 기타수당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- 응시원서 접수
 - 접수기간 : 2024. 4. 29.(월) ~ 5. 3.(금) 09:00 ~ 18:00 [평일 근무시간 내]
 - 접수장소 :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 (본관 4층, ☎02-3423-5514)
 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접수(신분증 지참) ※대리접수 불가
- ※ 응시원서 등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
- ※ 강남구 수입증지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- ※ 우편, 전자우편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

○ 시험일정

구 분	일 정	방법 및 장소
시험공고	2024. 4. 16.(화) ~ 4. 28.(일) [13일간]	강남구 홈페이지 게재
응시원서 접수	2024. 4. 29.(월) ~ 5. 3.(금) 평일 09:00 ~ 18:00 [5일간]	방문접수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4. 5. 9.(목) (예정)	강남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유선통보
면접시험	2024. 5. 17.(금) 14:00	강남구청 본관3층 제2작은회의실 ※ 일시 및 장소는 변동 가능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4. 5. 20.(월) [예정]	개별 유선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
최종합격자 발표	※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	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(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
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가 1차 서류전형 :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

나. 2차 면접시험 :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
- 대상 : 1차 서류전형 합격자
-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
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 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
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
없고,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다. 최종합격자 발표 :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
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
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 서류

※ 응시원서 양식 등은 강남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gangnam.go.kr>) '채용공고' 란에 게시

○ 응시원서 1부(별지 1호 서식)

– 응시수수료 : 강남구 수입증지 5,000원

(강남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5번 창구에서 구입 후 부착)

○ 이력서, 자기소개서(별지 2호, 3호 서식) 각 1부

-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○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4호 서식) 1부

○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5호 서식) 1부

○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별지 6호 서식) 1부

○ 주민등록초본 1통(남자의 경우, 병역사항 기재된 것)

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(별지 7호 서식) 1부

○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)

-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(원본)에 한해 인정
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
※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내의 서류여야 함

7. 기타 사항

○ 강남구청 홈페이지(www.gangnam.go.kr)에서 첨부파일(응시원서 및 이력서, 자기소개서 양식)을 출력하여 미리 작성하신 후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,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.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,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,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(단, 재공고의 경우 예외)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지역경제과 ☎(02)3423-55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